

1. 용도지역별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하기전에 행정절차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가. 도시지역

나. 관리지역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라. 농림지역

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반, 중심,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일반, 전용,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

나.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나,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원구역(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삼산면, 하일면 전지역)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주변에 일부 지정되어 있음

라.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